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8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5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및 행정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5
2.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 ...	9
3.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14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2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6.

다.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

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
(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제29조·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함.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V. 검토의견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및 행정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스로 등록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제3의2호·제8호 신설, 안 제11조제2항, 안 제59조제1호, 안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

현행	개정안
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신설> 4. ~ 7. (생략) <신설>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 7. (현행과 같음)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생략)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u>취소</u> 제64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u>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u>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u>사유로</u> ----- -----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청문) ----- ----- ----- --. 1. ----- ----- <u>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제6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u>

현행	개정안
2. ~ 6. (생략)	<u>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한 자</u>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산림복지전문업¹⁾과 달리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 처분 및 벌칙 적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스로 등록취소를 원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를 할 근거가 없어,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로 활용되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고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에 대한 이용권자의 신뢰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도 개정안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1)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는 제외)와 스스로 등록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제도를 도입하여,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의2호·제5호,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3 신설, 안 제59조제3호, 안 제6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 ----- ----- ----- ----- ----- -. ----- -----.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3. · 4. (생략) <u><신설></u>	3. · 4. (현행과 같음) <u>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u>
<u><신설></u>	<u>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u>
②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현행	개정안
	<u>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u> <u>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u> <u>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u> <u>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u> <u>4. 폐업하려는 경우</u> <u>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u> <u>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u>

현행	개정안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u>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u>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u>취소</u>	제59조(청문) ----- ----- ----- --.
제66조(과태료) ① (생략)	3. ----- ----- <u>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② ----- ----- -----.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u>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u>
3. ~ 5. (생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및 취소제도는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이후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의 변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고,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자격요건 미충족 및 운영 중단 업체가 계속하여 등록업체로 관리되고 산림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현행법은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를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의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성계획 승인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2단계로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제27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7조, 안 제60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u>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u> 5.·6. (생략) ② ~ ⑦ (생략)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산림복지단지</u> ----- ----- 5.·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 -----

현행	개정안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u>고려하여</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하여</u>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u>위치·면적</u> 2. (생략)	----- - <u>고려하여</u> ----- ----- -. ② ----- ----- ----- -----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 ----- ----- .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 ----- ----- -. 1. ----- <u>명칭·위치·면적</u>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신 설></u> <u>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일 부터 <u>3년</u>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u>조성계획</u>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	<u>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u> <u>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 ----- ----- ----- ----- -. 1. ----- - <u>2년</u>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 <u>실시계획</u>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② <u>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 6. (생략) ③ <u>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④ <u>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자연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u>	① <u>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u>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수 있다.</u>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u>수립</u>·<u>승인</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략)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u>제3항까지</u>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u>지정</u>,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	② ----- <u>수립</u> ----- -----.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 ----- ----- ----- ----- -----. 1. ~ 29. (현행과 같음) 30. ----- ----- <u>제3항까지</u> <u>지</u> 및 제19조----- <u>지</u> <u>정</u> 및 지정해제----- ----- ----- ----- ----- -----

현행	개정안
가 ② ~ ④ (생략)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 6.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수수료)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6.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②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③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나 지역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치거나,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수립 중 지구지정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구지정

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현행 3단계 인·허가 절차를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줄이고 산림복지공간 조성기간 단축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산림청은 개정안 시행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 비용이 절감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안 제3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 수립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조성계획 제출 및 지구지정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산림청장의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 간 연계규정이 미비하므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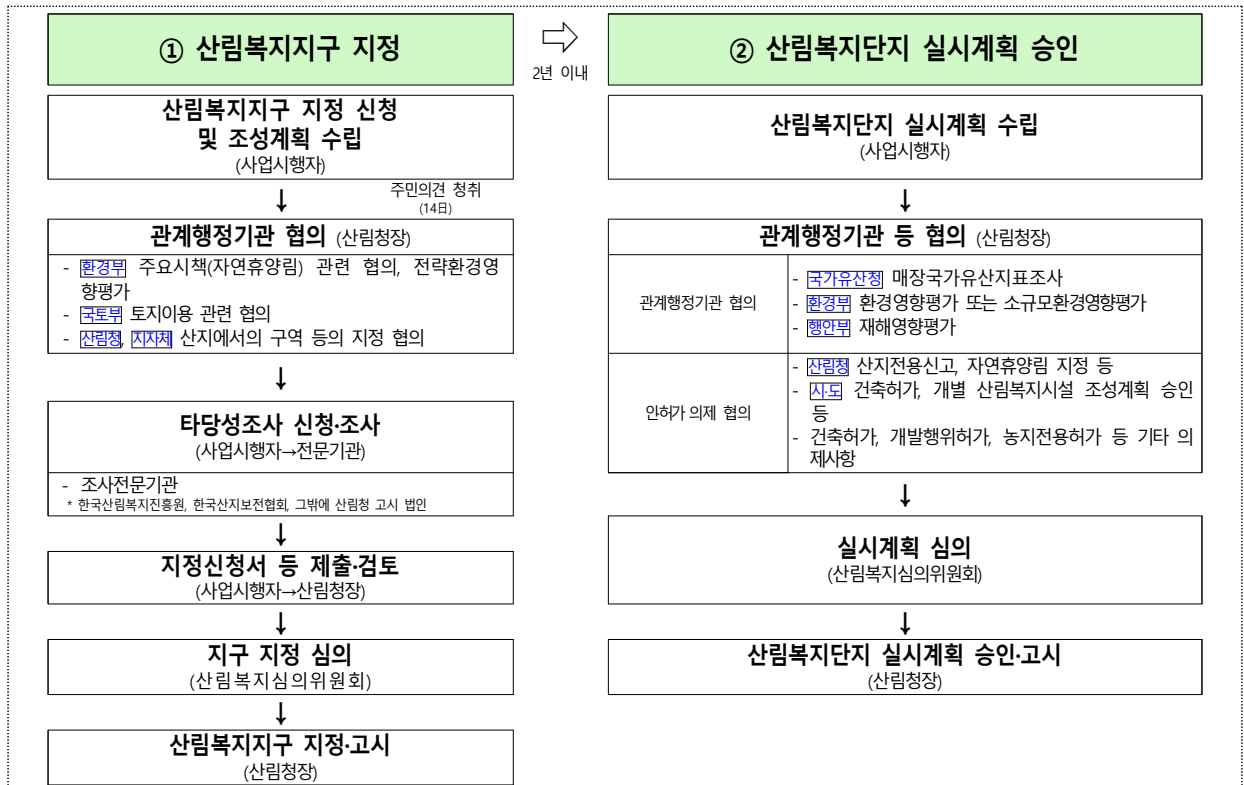
또한, 개정안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제도는 제34조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바, 동 제도가 유지되는 한 타당성조사 제출 절차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산림복지단지 조성 개정 전·후 절차도 】

○ 개정 前(3단계) : 지구 지정 → 조성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개정 後(2단계) : 지구 지정 → 실시계획 승인



참고로, 지구(구역 또는 단지)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지구 등 지정 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u>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u>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제55조²⁾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2)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제1항),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³⁾

진흥원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⁴⁾이며 산림청장의 업무 감독과 예산 승인을 받는 기관으로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으나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 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사업 운영에 충당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진흥원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흥원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4)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기부금품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탁의 자발성과 기·수탁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품금품 접수 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산림청은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산림청 산하 유사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경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⁵⁾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